

국민건강보험에 대하여

※39 세 까지



1 국민건강보험 제도란? <전 국민 보험> LOOK HERE

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에 가면 비용(의료비)이 발생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가 평소의 수입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의료비의 일부 부담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전 국민이 서로 돕는 제도입니다.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의무이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체류 기간이 3 개월이 넘으며 일본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으로, 다른 공적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치료를 받는 활동, 그 사람의 일상생활을 돌보는 활동' '관광·보양 그 외 이와 비슷한 활동' 등 특정 활동은 예외)

'병에 걸릴지 알 수 없다' '보험료를 납부하고 싶지 않다'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보험증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 국민건강보험 가입 수속에 대해서 14 일 이내에 수속해주십시오.

- ① 일본에 입국했을 때
종합 창구과에서 전입신고를 한 후, 체류카드와 여권을 지참하여 국민건강 보험과에서 수속해주십시오.
- ② 이사하여 도시마구로 전입했을 때
종합 창구과 또는 구민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새로운 보험증을 받으십시오. (체류카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등기우편으로 자택으로 우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③ 전에 살던 시구정촌에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전입 신고를 한 후, 체류카드와 여권을 지참하여 국민건강 보험과에서 수속해주십시오.
또한, 구민 사무소에서는 전입과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 탈퇴 수속에 대해서 14 일 이내에 수속해주십시오.

- ① 도시마구에서 전출(출국)할 때
여권 또는 체류카드, 국민건강 보험증을 지참하여 종합 창구과 또는 구민 사무소에서 수속해주십시오.
- ② 그 외 공적인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때
여권 또는 체류카드, 국민건강 보험증, 다른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국민건강 보험과 또는 구민 사무소에서 수속해주십시오.

※장기적으로 출국할 때는 해외 전출 신고를 해주십시오. 신고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계속 발생합니다.

※도시마구 외의 전출 또는 다른 공적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바로 탈퇴수속을 해주십시오. 또한, 도시마구의 구민 건강보험증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용했을 경우에는 의료비를 반납해야만 합니다.

4 보험증의 유효기간

보험증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체류 기간과 같습니다. 체류 기간 갱신 후, 보험증과 체류카드를 지참하여 국민건강 보험과에서 유효기간 갱신 수속을 해주십시오. 유효기간이 지난 보험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보험료에 대해서 학생 할인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균등할액"과"소득할액"으로 나뉘어 계산합니다.
"균등할액"이란 소득과 관계없는 가입자 한 명당의 보험료입니다.
"소득할액"이란 전년도 소득(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으로 계산한 보험료입니다.

◎전년도 소득이 없는 분이며 신고를 한 경우 (39세까지)
일본에서 전년도의 소득이 없는 분은 "균등할액"은 발생하지만 "소득할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균등할액" 감액 제도가 있으므로 2022년도 연간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 전년 소득이 0엔인 경우

균등할액 16,590엔 [55,300엔 × 0.3 (균등할액 70% 감액)] + 소득할액 0엔 = 16,590엔

균등할액의 금액은 매년 바뀝니다.

◎전년도 소득이 있는 분 (39세까지)

"소득할액"과"균등할액"의 보험료가 발생하므로 2022년도 연간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소득으로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소득이 기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균등할액의 감액이 있습니다)

(예) 전년도 수입이 1,600,000엔인 경우 → 소득 환산하면 전년 소득 1,050,000엔

균등할액 55,300엔 + 소득할액 58,528엔 [(1,050,000엔 - 430,000엔) × 9.44%] = 113,828엔

균등할액 금액과 소득할액 요율은 매년 바뀝니다.

소득이 없는(기준액 보다 적은)분이어도 매년 주민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균등할액을 감액조치하지 않습니다. 매년 1월 1일에 주소지의 관공서 세무 담당과에 신고해주시요.

또한, 이사하여 1월 2일 이후에 **도시마구로 전입한 분의 보험료는, 전년도의 소득을 알 수 없으므로 처음에는 균등할액만으로 계산합니다.** 그 후, 신고한 시구정촌에 소득조회를 하여 소득할액을 계산합니다. **이 때문에 연도 도중에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기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균등할액이 감액됩니다.)

전입신고를 한 후에 다른 시정구촌에 주민세 신고를 한 분은 도시마구 국민건강 보험과로 연락해주시요.

6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 ① 납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과 최고장을 보냅니다.
- ② 독촉장을 보내도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은행과 근무처 등에 재산조사, 적금, 급여 등을 압류합니다.
- ③ 체납 처분에 필요한 조사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④ 보험료를 체납하면 입국관리국 등의 조사 대상이 됩니다.
- ⑤ 체납이 누적되면 교부하는 보험증의 유효기간이 짧아집니다.
- ⑥ 체납이 거듭 누적되면 보험증 교부를 할 수 없으므로 의료비가 전액 본인 부담이 되는 '피보험자 자격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미납 보험료 문의처 : 도시마구 국민건강 보험과 정리수납·특별정리 그룹
전화 : 03-3981-1294, 03-3981-1295

문의처 : 도시마구 국민건강 보험과 자격·보험료 그룹

전화 : 03-4566-2377